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717호

붙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1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3조(「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여수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5조(「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6조(「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한다.

제7조(「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8조(「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제9조(「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156조”로 한다.

제13조(「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14조(「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17조(「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19조(「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0조(「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민회관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22조(「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3조(「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

정)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4조(「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5조(「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의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한다.

제30조(「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에 규정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 ----- ----- -----</p> <p>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여수시청</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p>

<p>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p>
--	-------------------------------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4조(예우) ①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 -----.</p> <p>② (현행과 같음)</p>

4.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임사항) ① <u>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생략)</p>	<p>제2조(위임사항)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5.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p>

<p>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 ----- ----- ----- ----- -----.</p>
--	---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23조부터 제134조----- ----- ----- ----- ----- ----- -----.</p>
<p>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보건의료를 위</p>	<p>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 ----- ----- -----.</p>

<p>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지역 이외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② ~ ⑦ (생략)</p> <p>제2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중부민원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2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8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7.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p>	<p>제5조(적용범위)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130조----- ----- -----</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8.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지방자치법」 제182조----- ----- ----- -----.</p>

9.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 -----.</p>

10.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p>	<p>제1조(목적) ----- -----</p>

<p>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 -----.</p>
--	---

11.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 -----.</p>
<p>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p> <p>2. 3. (생략)</p>	<p>제3조(획정기준) ----- -----.</p> <p>1. ----- ----- -----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 -----.</p> <p>2. 3. (현행과 같음)</p>

12.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6조 ----- ----- ----- -----.

13.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 제출 사항 4. ~ 8. (생략) ②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지방자치법」 제148조 -----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p>	<p><삭 제></p>

15.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 ----- ----- -----.</p> <p>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생략)</p> <p>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u>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u>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u>의회에 부의하기 전</u>)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u>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u>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의 <u>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u> <u>의회에 부의할 때</u>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현행과 같음)</p> <p>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u>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u> ----- ----- -----.</p> <p>③ ----- <u>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u> ----- -----.</p> <p><삭 제></p>
---	---

16.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42조----- ----- ----- ----- -----.</p>

17.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p>

18.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p>	<p>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법」 제154조-----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_____.
-----------------------	--------

22. GS칼텍스 예술마루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 「GS칼텍스 예술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 --- 「지방자치법」 제161조 --- _____ _____ _____.

23.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여수시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_____ _____ 1. ----- 「지방자치법」 제16조 ----- _____ _____. 2. ~ 5. (현행과 같음)

24.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기금의 설치) -----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25. 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여수시의회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26.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2조(설치 및 관리) ----- -----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 ----- ----- -----.</p>

27.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근거해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설치) ----- ----- -----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 -----.</p>

28.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u>에 따라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47조제3항----- ----- ----- -----.</p>

29.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지방자치법</u>」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 5. (생략) 	<p>제2조(적용 범위)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지방자치법</u>」 제70조----- ----- ----- ----- ----- 3. ~ 5. (현행과 같음)

30.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 ----- -----.</p>

31.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 ----- ----- ----- -----.</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p>

1. (생략)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
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
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
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
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
9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
의 사무와 법제41조제3항에 규
정된 국가위임사무와 전라남도
(이하 “도” 라 한다)위임사무
중 국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직접 감
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
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
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
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 ----- 법 제13조
에 따른 -----
법 제49조제3항-----

② (생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증인으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정수 및 수납·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과태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

3. (생략)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

-----.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수시여비조례의 국내여비지급규정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

제12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

피감사공무원선서서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

제12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

제13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

[별표1]

선 서

본인은 여수시의회 ○○
○○위원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여수시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
다.

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별지 제1호서식]

----- 「지방자치
법」 제49조-----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관	임시적 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입기한		년 월 일			
일금 ₩					
<p>위의 과태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여수시의 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여 수 시 장</p>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	처분청	납부 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며 위에 적시한 사유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여 수 시 장 귀하</p>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right;">「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p>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right;">「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p>					

32. 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51조에 따라 ----- ----- -----.</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범위) ----- ----- -----.</p>
<p>1.·2. (생략)</p> <p>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p>	<p>1.·2. (현행과 같음)</p> <p>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